

의안번호	2207343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5. 2. 11.
추 계 번호	25C0239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와 사무국 및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092억 9,500만원(연평균 1,61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	508	508	508	508	508	2,540	508
사무국의 설치(안 제14조)	2,246	2,246	2,246	2,246	2,246	11,230	2,246
지역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1,555	1,555	1,555	1,555	1,555	7,775	1,555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 (안 제23조)	157,550	157,550	157,550	157,550	157,550	787,750	157,550
합 계	161,859	161,859	161,859	161,859	161,859	809,295	161,8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의무규정
3	안 제15조(지역위원회의 설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6조(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확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7조(조사 및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 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	
2	안 제14조(사무국의 설치)	○	
3	안 제15조(지역위원회의 설치)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6조(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	- 안 제23조에 따른 센터 수행 가정
5	안 제17조(조사 및 연구)	×	- 안 제23조에 따른 센터 수행 가정
6	안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	- 안 제23조에 따른 센터 수행 가정
7	안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 안 제23조에 따른 센터 수행 가정
8	안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원회(안 제12조) 및 사무국의 설치(안 제14조)와 관련한 추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회의예산과 사무국 예산 평균액을 참조하여 추계
- 지역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예에 따라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예를 참고하여 추계함
 - 재정수반요인 중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6조), 조사 및 연구(안 제17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안 제20조) 및 국제교류 활성화(안 제22조) 관련 업무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한다고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안 제12조 및 제14조)

□ 위원회 운영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2024년 평균 회의예산액을 적용하고, 사무국 운영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2024년 평균 사무국 예산액을 적용함

- 2024년 기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18개이고, 이 중 행정위원회의 성격의 위원회가 1개¹⁾, 자문위원회의 17개임
 - 대통령 소속 17개의 자문위원회 중 회의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14개이고, 2024년 평균 회의예산액은 5억 800만원임
 - 또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예산을 편성한 위원회는 13개 위원회로, 2024년 평균 사무국예산액은 22억 4,600만원임

[표 2]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위원회명	회의예산	사무국예산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13,967	3,291,033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91,890	2,724,110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
4	2050 탄소중립위원회	665,000	2,413,000
5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79,000	650,000
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85,000	1,380,000
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575,694	1,712,306
8	국가도서관위원회	164,000	337,073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28,920	—
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6,372	—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00,500	10,196,500
1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344,000	656,000
13	지방시대위원회	—	5,581,000
14	국가우주위원회	—	—
15	국민통합위원회	1,891,203	2,566,797
16	국가물관리위원회	1,075,000	3,436,000
1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600,000	3,239,000
평 균		507,679	2,246,048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1) 규제개혁위원회

- 추계기간 동안 위원회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사무국예산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위원회 운영비로 5억 800만원, 사무국 운영비로 22억 4,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3]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 소요예산: 2026~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운영비	508	508	508	508	508	2,540
사무국 운영비	2,246	2,246	2,246	2,246	2,246	11,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역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 수에 지역위원회의 평균 운영비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유사 위원회(예: 공공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예에 따라 위원 수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과반수인 8명으로 가정할 경우, 1개 지역위원회당 연간 64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위원회가 분기별로 1회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8명의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²⁾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은 연간 640만원으로 추정
 - 추가재정소요 = 8명×20만원×4회

2)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1명당 20만원(2시간 이상 회의 참석)으로 가정함

[표 4] 지역위원회 소요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수(A)	지역위원회 당 평균 운영비(B)	합 계(C=A×B)
243	6.4	1,555

- 추계기간 동안 지역위원회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위원회 운영비로 연평균 15억 5,500만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역위원회 운영비	1,555	1,555	1,555	1,555	1,555	7,7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운영비

- 제정안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했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³⁾
-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게 될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같은 규모로 운영된다고 가정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게 될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도시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2분의 1 규모로 운영된다고 가정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위탁운영비 예산액은 2020년 12억 6,612만원, 2021년 9억 5,109만원, 2022년 14억 3,261만원 평균 약 12억 1,661만원임⁴⁾

3) 위탁운영비 지원은 2024년 이후 종료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에 위임됨

[표 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액
위탁운영비	126,612	95,109	143,261	121,661

주) 2020년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반영
자료: 서울특별시 예산서

- 앞의 가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같은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는 2분의 1 규모로 설립·운영된다고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1,575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고 해당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표 7] 제정안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운영비 소요예산 (단위: 만원)

구 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수(A)	위탁운영비(B)	합 계(C=A×B)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16	121,661	1,946,576
기초자치단체	227	60,830	13,808,410
합 계			15,754,986

주) 서울특별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자치단체 수에서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규모를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센터 운영비로 연평균 1,575억 5,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4) 2023년 예산액은 2억 7,210만원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감소한다고 추정하여 동 추계에서의 평균액 산정시 제외함

[표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운영비 예산 현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예산액	157,550	157,550	157,550	157,550	157,5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